

##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### 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#### -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투자신탁명칭: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생략</b>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생략</p>	<p>투자신탁명칭: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좌동</b>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<u>아. 삭제</u>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좌동</p> 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</u></p>

		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8. <u>삭제</u>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 부책임: 김정아	<b>책임: 김정아</b> <b>부책임: 심찬보</b>
	<모투자신탁 투자전략> (1) 투자전략: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MKF 원자재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함 1) 운용전략 - 지수추종 (가) MKF 원자재 지수의 수익률 복제를 위해 원자재 선물들에 주로 투자하고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일부 투자 ※ 투자대상은 지수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2) 운용전략 - 채권 및 유동성자산 운용 (가) 원자재 선물을 주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선물 투자에 필요한 증거금 등 이외의 부분은 채권 및 유동성자산으로 운용 (나) 투자신탁의 설정/해지 추이, 금리 전망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절 ※ 비교지수: MKF 원자재 지수*100%	<모투자신탁 투자전략> (1) 투자전략: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 1) <u>운용전략 - 원자재 선물 및 ETF 투자</u> (가) <u>KB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계량 투자 모델을 활용하여 원자재 섹터 별 대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선물에 주로 투자하고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일부 투자</u> (나) <u>유동성(거래대금) 및 국내경제에의 영향력(국내 수입량)을 7:3의 비율로 합산하여 원자재선물 유니버스(에너지는 CME와 ICE, 금속은 LME와 CME, 농산물은 CME) 내 종목별 총점을 계산하고 각 섹터별로 최대 3개까지 종목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 구성</u> (다) <u>매년 11월에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 선정 및 섹터·종목의 비중을 결정하며 이 때 섹터별로 최대 40%, 최소 25%의 편입한도 적용</u> ※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관련 선물에 주로 투자하므로 선물 가격에 롤오버 손익이 반영되어 실물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괴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2) 운용전략 - 채권 및 유동성자산 운용 좌동

※ 비교지수: 해당사항 없음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-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</p> <p>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</p> <p>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아. 삭제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
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생략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좌동</p> 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
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

	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8. <u>삭제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부책임: 이명우	<b>부책임: 이상훈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 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 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라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 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 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라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사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아. <u>삭제</u>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
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생략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

		<p>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 <p>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 <p>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8. <u>삭제</u></p>
	-	※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
-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생략</b>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좌동</b>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</p>

	<p>(주식-파생형) 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 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 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	<p>(주식-파생형) 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사.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 <u>아. 삭제</u> 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 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
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①~③생략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①~③좌동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-</p>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 8. <u>삭제</u>  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<p>투자설명서</p>	<p>책임: 임승관 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</p>	<p><b>책임: 김정아</b></p>

-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p>신탁계약서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8. 생략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8. 좌동</p> <p>9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<u>아. 삭제</u>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
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생략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~③좌동</p> <p><u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
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 <p>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</p>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</p> <p>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</p>

	<p>파생형)</p> <p>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	<p>파생형)</p> <p>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8. 삭제</p>
	-	※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<p>책임: 임승관</p> <p>부책임: 김정아</p>	<p><b>책임: 김정아</b></p> <p><b>부책임: 김보람</b></p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</p> <p>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 <p>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</p> <p>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</p> 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 <p>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</p> <p>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</p> <p>사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 <p>아. 삭제</p> <p>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
	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1. ~ 3. 생략</p> <p>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	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1. ~ 3. 좌동</p> <p>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110%</u>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



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생략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4.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8. 삭제
	-	※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 부책임: 김보람	<b>책임: 김보람</b> <b>부책임: 심찬보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생략 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좌동 8. “전환형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“KB 올스타 엠브렐러”라 한다)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.

	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사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 아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 가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p>	<p>가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나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다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라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바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사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 <u>아. 삭제</u>  10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 가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</p>
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①~③생략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①~③좌동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
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7.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 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p>	<p><b>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</b>  1.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2.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4. KB스타 미국 S&amp;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 6.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  7. <u>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</u>  <u>8. 삭제</u></p>
	<p>-</p>	<p>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</p>
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
--	--

- KB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.0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1. ~ 2. 생략 3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1. ~ 2. 좌동 3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200%</u>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생략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-	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
- KB 연금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 부책임: 김정아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<b>책임: 김정아</b> <b>부책임: 김보람</b>

- KB 미국 S&P500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/강진원 부책임: 김정아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<b>책임: 김정아/강진원</b> <b>부책임: 김보람</b>

- KB 연금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-	※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	<b>책임: 김정아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차이나 H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/강진원	<b>책임: 김정아/강진원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연금 인덱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
- KB 퇴직연금 인덱스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부책임: 이명우	<b>부책임: 이상훈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	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</b> 12.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
		<b>제39조(보수) ③</b> 12.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8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생략	<b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		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-	※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
2. 변경일: 2020년 04월 17일(금)